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중 "승용자동차"를 "자동차"로 하고, 동조제1항 본문중 "취득세와 등록세"를 "취득세·등록세 및 면허세"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예) 이 조례는 1999년도분 면허세부터 적용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면허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